

『반듯하게,가치있게,행복하게』지적재조사사업

---

2017년 하동군 지적재조사사업  
**과 업 지 시 서**

---



**하 동 군**  
**[ 민 원 과 ]**

# <목 차>

<b>I. 과업의 개요</b> .....	<b>3</b>
1. 과업명 .....	3
2. 지구명 .....	3
3. 업무량 .....	3
4. 과업의 목적 .....	3
5. 과업기간 .....	3
6. 과업범위 .....	3
<b>II. 일반사항</b> .....	<b>5</b>
1. 적용범위 .....	5
2. 법규 우선 준수 .....	5
3. 용역 감독의 권한 .....	5
4. 수행자의 책임 .....	5
5. 법규 준수의 의무 .....	6
6.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등 .....	6
7. 참여 기술자의 교체 .....	7
8. 보안 및 비밀유지 .....	7
9. 착수 신고서 제출 .....	8
10. 과업 수행 보고 .....	8
11. 과업의 추가·변경 및 하자보수 .....	8
12. 용역 중지 .....	9
13. 용역의 변경 및 사업정산 .....	9
14. 성과품의 제출 .....	10
15. 기타사항 .....	10
<b>III. 과업내용</b> .....	<b>11</b>
1. 관련법령 .....	11
2. 지적재조사 측량계획 수립 및 계획도 작성 .....	11
3. 기준점 측량 .....	11
4.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	11
5. 사업지구 경계결정 .....	12
6. 일필지 경계점의 측정 .....	12
<b>IV. 세부일정</b> .....	<b>14</b>
<b>V. 기타</b> .....	<b>15</b>

# I

##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2017년 하동군 지적재조사사업』

2. 지구명

- 적량면 우계리 서당지구
- 고전면 명교리 명교지구

3. 업무량 : 434필지/357,383㎡

- 적량면 우계리 610번지 일원 183필지/234,664㎡
- 고전면 명교리 295번지 일원 251필지/122,719㎡

4.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함.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7. 12. 31.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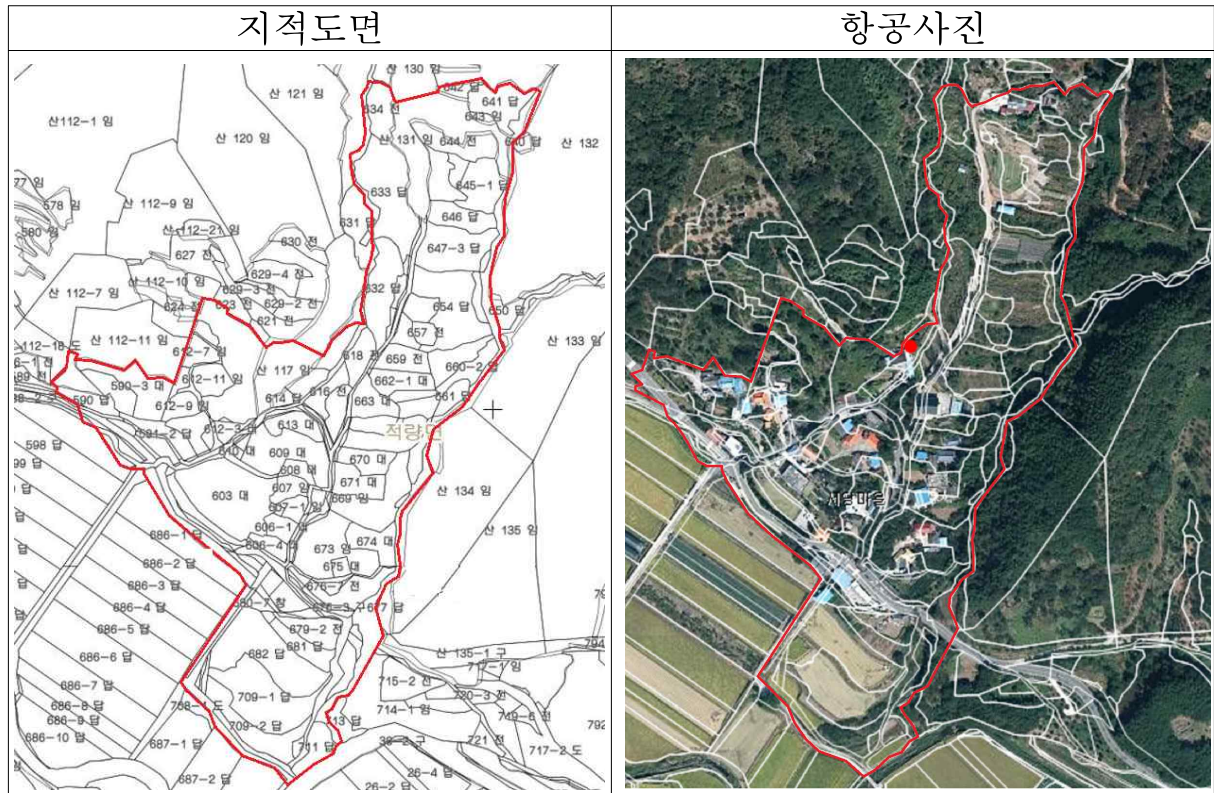
- ※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에 의거 적합한 판정을 득하였을 때까지를 말하며, 지적측량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일수에 포함된다.

6. 과업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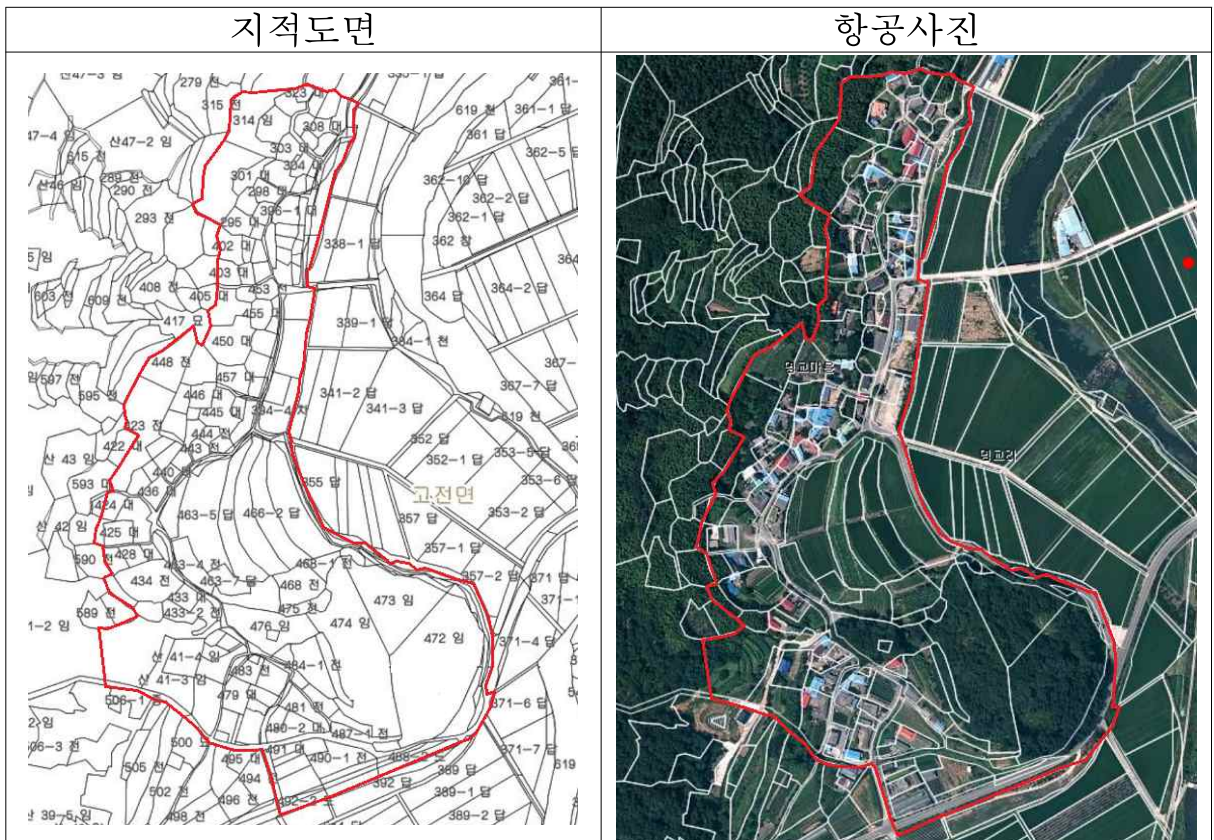
- 내용적 범위
  - 지적재조사측량을 위한 기준점 및 일필지경계점측량
  - 지적재조사를 통한 일필지조사서 및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
  - 경계조정을 위한 경계점표지 설치, 경계 및 면적조정, 지적확정조서 작성 등

○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610번지 일원



-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명교리 295번지 일원



## II

## 일반사항

###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하동군 지적재조사측량의 과업수행에 적용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 『지적재조사측량 규정』, 『지적재조사측량 업무규정』 등에 따라 검토 후 감독관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 2. 법규 우선 준수

가. 수행자는 이 과업지시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정부의 상위계획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제반 계획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행하며 감독관과 협의한다.

### 3. 용역 감독의 권한

가. 감독원은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수행자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 및 기술인력 동원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나. 수행자는 감독원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4. 수행자의 책임

가. 책임한계

- ① 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② 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③ 수행자가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용역 중 또는 용역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

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행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 ⑤ 수행자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의신청 등에 따른 경계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측량성과 재작성 및 각종 성과품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지시의 이행

감독관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수행자에게 문서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수행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다. 관계기관 협의

- 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지적에 관하여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 및 토지소유자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수행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수행자는 협의완료 후 협의결과를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 『지적재조사측량 규정』, 『지적재조사측량 업무규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할 것이며, 과업내용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5. 법규 준수의 의무

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6.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등

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①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② 측량방법, 대상 등의 변경
- ③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④ 참여기술자의 변경

⑤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할 상황

## 7. 참여 기술자의 교체

가.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은 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용역 감독관을 경유하여 용역업무 수행부서에 신고 후 승인을 득한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완관계 법규의 준수

① 수행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상기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자가 져야 한다.

나. 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행자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아야 한다.

다.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보안 관리의 책임

수행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를 금지한다.

바.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사. 매월 사업책임기술자는 수행자에게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기타 용역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발주처의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따라야 한다.

## 9. 착수 신고서 제출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착수계
- ② 용역 대리인계
- ③ 수행자 명단
- ④ 보안관리 선임계
- ⑤ 참여하는 전체 기술자의 기술자격과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⑥ 예정공정표
- ⑦ 보안각서
- ⑧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10. 과업 수행 보고

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처는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 11. 과업의 추가·변경 및 하자보수

가.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이 과업의 추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는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① 상위계획 또는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 시
- ② 관계부서 또는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③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측량성과에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경계조정 등으로 작성도서의 내용수정을 위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2. 용역 중지

①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부서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 기간 소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계약 기간내 본 업무를 완료치 못했을 때에는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지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의 대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감독관의 연기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3. 용역의 변경 및 사업정산

①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②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 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실제 사업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③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과업수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단, 사업변경으로 인한 증가는 예외로 한다.

④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⑤ 본 과업의 진행 도중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

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 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본 과업 미이행(하자)시 사업비 집행을 청구 할 수 없다.

#### 14. 성과품의 제출

“별지1” 과 같음

#### 15. 기타사항

-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전문적인 견해와 자문을 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추가로 검토 연구하여 과업목적을 달성하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여 추가로 요청한 항목에 대해서도 검토 연구하여야 한다.
- 나. 과업수행 중 감독관 요청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회의를 개최 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회의결과 과업내용에 반영함에 타당한 내용이 나왔을 경우는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다. 성과품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라. 성과품의 종류, 내용, 수량 등이 해당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을 수행함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하므로 상기 성과품의 내용은 소관청 협의과정이나 관련 법령의 변경 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자는 수행자 부담으로 필요한 성과품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마. 지적재조사측량의 과업 범위는 정부방침 및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지적재조사측량 업무수수료는 사업지구 지정 당시인 종전필지로 정산한다.
- 바. 수행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Ⅲ

## 과업내용

#### 1.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지적재조사측량 규정 제1조)

과업 수행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지적재조사측량 규정」,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지적재조사 측량계획 수립 및 계획도 작성(지적재조사측량 규정 제5조)

지적재조사 측량 수행에 있어 현지조사 측량 전 사업지구 인근에 설치된 국가기준점(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위치, 관측환경 등 현장특성을 조사하여 측량방법(위성측량 또는 토탈스테이션측량) 및 절차 등을 기록한 측량계획을 수립하고 측량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3. 기준점 측량(지적재조사측량 규정 제7조)

기준점 측량은 위성측량방법(네트워크 RTK 위성측량, 단일 기지국 RTK 위성측량, 정지측위 위성측량)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기준점 성과의 작성 단위

항 목	경 위 도	거 리	평 면 직 각 좌 표	표 고
단 위	도 · 분 · 초	m	m	m
차 리 수	0.0001	0.001	0.001	0.001

#### 4. 임시경계점표지 설치(지적재조사측량 규정 제11조)

가. 경계다툼이 없는 경우는 담장·구조물 등 지형지물에, 토지소유자간 합의한 경우에는 그 경계에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리본 등을 이용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임시 표지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기존 지적공부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 등), 「지적재조사측량 규정」 제11조(임시경계점표지의 설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5. 사업지구 경계결정(지적재조사측량 규정 제9조)

지적도면의 지구 외곽 경계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지경계선과 사업지구 경계선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거나, 현행법에 의한 도해 측량방법에 따라 사업지구 경계점을 복원한 후 이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재관측하여 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 6. 일필지 경계점의 측정(지적재조사측량 규정 제8조)

일필지 경계점 측정은 위성측량 방법으로 시행하며 장애로 인하여 위성 측량이 불가능한 지역은 토탈스테이션측량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가. Network-RTK 측량

측정횟수(세션)	관측간격	측정시간	데이터 수신간격
2회 이상	60분 이상	고정해를 얻고 나서 15초 이상	1초
※ 단일기지국 RTK 기지점과의 거리는 5km 이내로 한다.			

#### 나. 토탈스테이션에 의한 일필지 경계점 측정

구분		측정횟수	측정단위	허용교차
수평각	방향관측법	1대회	초	±30" 이내(1대회 폐색)
	배각법	2배각	초	±20" 이내(2배각 교차)
수평거리		2회	0.001m	0.005이내(거리측정교차)
※ 기지점과 일필지 경계점간 측정거리는 300m 이내로 한다.				

#### 다. 측량성과 계산 및 점검(지적재조사측량 규정 제13조)

##### ① RTK 측량 성과 계산 단위

구분	경위도	타원체고	평면직각좌표	안테나고
단위	도·분·초	m	m	m
자리수	0.0001	0.001	0.001	0.001

② 토탈스테이션 측량성과 계산 단위

구 분	각	거 리	평면직각좌표
단위	초	m	m
자리수	1''	0.001	0.001

③ RTK측량, 토탈스테이션측량 성과 결정 단위

항 목	평면직각좌표	각의 값	거리
단위	m	초	m
자리수	0.01	1''	0.01

④ 일필지 경계점간 계산거리와 실측거리 확인(지적재조사측량 규정 제8조)

경계점간 계산거리 단위	경계점간 실측거리 단위	연결교차
0.01m	0.01m	±0.07미터 이내

라. 측량성과검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① 기준점측량

-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성과와 검사측량 결과의 연결교차가 ±0.03미터 이내일 경우 최종성과 인정

② 일필지 경계점 측량

- 일필지 경계점 측량성과와 검사측량 결과의 연결교차가 ±0.07미터 이내일 경우 최종성과 인정

마. 일필지조사서 작성(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13조)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13조(일필지조사서 작성 등)에 의거 작성

바.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2조)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2조(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에 의거 작성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사업시행자인 소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IV

세부일정

세 부 내 용	착수일로부터 (4개월)			
	M	M+2	M+3	M+4
일필지조사	■			
기초측량 및 일필지 측량		■		
경계점 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측량			■	
성과심사				■

V

기타

[별지 제1호 서식]

성과품의 제출

구 분	납 품 도 서		수량	비고
기준점측량	1. 지적기준점 위성측량부 2. 지적위성측량관측표 3. 지적위성측량관측망도 4. 지적위성측량관측기록부(정지측량) 5. 기선해석부 6. 기선벡터점검계산부 7. 기선벡터점검계산망도 8. 좌표변환계산부 9. 조정계산부 10. 지적위성측량성과표 11. 표고계산부(위성측량) 12. 지적기준점 성과표 13. 위성측량 성과 검사부 14. 지적위성측량기점검기록부 15. 관측데이터(Raw 및 Rinex, 프로젝트파일, CD제출)		각2부	
세부측량	공통	16. 지적재조사측량성과도 17. 지구내종전도 18. 신규대조도 19. 지구계점망도	각2부	
	RTK GPS	20. 지적위성측량부 21. 지적위성측량관측표 22. 지적위성측량관측망도 23. RTK 사전점검부(체크리스트) 24. RTK 관측기록부 25. RTK 성과표 26. 이동측량(RTK) 경계점좌표계산부 27. 지적위성측량기점검기록부 28. 지적도근점성과표 29. 장비별 S/W 출력물 30. 관측데이터 파일		
	T/S	31. 경계점(보조점) 관측 및 좌표 계산부		

구 분	납 품 도 서	수량	비고
성과물 및 확정조서	32. 재조사측량 결과도 33. 재조사측량 성과도 34. 면적집계표 및 대비표(XLS 파일 포함) 35. 지적확정조서 36. 종전 지번별 조서 37. 지구계점 망도 38. 경계(보조점) 관측 및 좌표계산부 39. 좌표면적 및 점간거리 계산부 40. 지적재조사 확정도 41. 종전도 42. 신구대조도 43. 경계점표지 등록부	2부 2부 2부 2부	
지구계분할 측량 시	44. 지구계분할 측량성과도 45. 지구계분할 조서	2부 2부	
파 일	46. 도면파일 (DWG 파일) 47. 작업파일 (GDB 파일) 48. 현황파일 (SVY 파일) 49. 토지이동정리파일 (DAT 파일) 50. 조서파일 (XLS 파일)	CD 2부	



[별지 제2호 서식]

## 보 안 각 서

(대행기관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군청과 계약 체결한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침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 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하동군수 귀하

# 보 안 각 서

(대행참여사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군청과 계약 체결한 지적재조사측량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침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하동군수 귀하